



##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2 년 8 월

### • 예규·판례

가. AAA 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으며, AAA 는 청구법인과는 구분되는 미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원은 임금의 선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21 서 6962, 2022.08.04)

####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1999.7.1. 설립되어 분체(粉體) 이송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2009 년 12 월 코스닥 상장)로서, 2009 년 5 월부터 2010 년 6 월까지 aaa 등 4 명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영입대가(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2009.11.3. aaa 과 'OOO 현지법인 설립 및 운

영을 위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11.10. 000 에서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AAA’(이하 “000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 하여 aaa 을 000 현지법인의 장으로 영입하였고, 그를 제외한 3 명은 청구법인 으로 영입하였음

- 청구법인은 aaa 의 영입과정에서 한 영입대가 지급약정에 따라 2010.4.26. aaa 에게 청구법인 주식 000 주를 주식이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aaa 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bbb 은 2011 년 5 월경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주식 000 주 상당(5% 주식배당 실시 후 000 주)의 매각대금 000 원을 aaa 에게 지급하였음
- 이후 bbb 이 2019.5.12.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aaa 등 4 명의 영입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급한 총 금원 000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0.7.2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b 에게 000 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소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000 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1 년 7 월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20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bbb 에게 지급한 화해금(소송손실) 000 원 중에서 000 현지법인장 aaa 의 영입대가에 해당하는 000 원(이하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은 000 현지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3 명의 청구법인 영입에 대하여는 손금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21.9.1. 청구법인에게 2020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의 지급근거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약상으로는 000 현지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000 현지법인에서의 법인장으로서의 근무 및 청구법인과 000 현지법인 사이의 경영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원은 aaa 의 000 현지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 청구법인은 aaa 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으로서 000 현지법인의 설립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aaa 과 000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쟁점계약을 체결한지 7 일 후 000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실제 aaa 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000 현지법인의 운영 및 근무를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aaa 은 000 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000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어 aaa 은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000 현지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이 000 현지법인의 설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원이 aaa 의 000 현지법인에서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는 임금의 선납으로서 000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이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08.24)**

■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제 100 조의 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1 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 <2 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 회신

- 질의의 경우 2 안이 타당함

다.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 손금산입됨 (기획재정  
부 법인세제과-330, 2022.08.24)

■ 질의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 <1 안> ‘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2 안> ‘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 회신

- 질의의 경우 2 안이 타당함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